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8일 /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 11. 22.)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현주 복지정책과장)

가. 개정사유

-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경비지원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정비(안 제6조)
- 경비지원 범위 및 대상 구체화(안 제13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다.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경희)

- 본 조례안은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경비지원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종합검토 결과

- 안 제6조에 제목을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로 하여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안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 안 제13조에 경비지원 내용 중 '그 밖에 선진 장사시설 비교를 통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추가하여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1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월 ~ 2028. 12월
- 사업규모 : 330,000㎡ (장사시설 65,353㎡, 예비부지 264,647㎡)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빈소5, 안치실2	화장로 8기	20,000기	60,000기 _(35,000㎡)	1개소

- 소요예산액 : 461억원(국113, 도24, 시324) ※ 기반공사 및 주민인센티브 미산정
- 주민 인센티브 지원
 - 유치지역 : 기금 40억, 화장시설 이용료 20%(30년간), 일자리 제공
 - 읍면지역 : 기금 80억,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45억 규모
 - 탈락지역 :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3~5억 규모

□ 추진실적

- '20. 2. :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제정
- '20. 4 ~ '24. 6. : 제1회 ~ 19회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개최
- '21. 7 ~ '24. 6. : 노인일자리기관 및 읍면동 주민설명회 실시(100회)
- '23. 6. 12 ~ 9. 9. : 추모공원 입지후보지 2차 공모 실시
- '23. 12.: 후보지 선정조사용역 실시
- '24. 4.: 포항추모공원 심포지엄 개최(2회)
- '24. 6. : 부지선정(구룡포읍 놀태1리)
- '24. 10.: 기본구상 용역(㈜대흥토목이엔지& 동림건축사무소, 143백만원)

□ 2024년 계획

- '25. 상반기 : 명칭공모 실시
- '27. 1월 : 건축공사 착공
- '28. 12월 : 추모공원 개원(예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